Yeosu
Web Contents

2024년 05월 03일 04시 20분

목차

목차 2
등록현황 3
급수공사 대행업자 제한 3

급수공사 대행업자 제한

2014.04.17 조회수 1273 등록자 박종열

관리번호	전라남도 여수시-2008-0008
담당부서	수도행정과
상위법령	수도법 제38조
규칙	여수시 수도급수공사대행업 시행규칙 제4조
유형	3호 - 기준설정(기준고시 등)
등록사유	국토도시개발
법령공표일	기존규제
존속기한	2007-01-16
규제시행/폐지일	2007-01-16
규제내용	제4조(지정기준) ① 대행업자의 지정기준은 별표 1의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 ② 제1항의 시공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 이상, 토목.기계분야 초급이상 자격취득자(단, 상수도 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자)로서 여수시 관내에 거주하는 자라야 한다.

목록

이전글 전라남도 여수시-2008-0007

다음글 전라남도 여수시-2008-0009

COPYRIGHT © YEOSU-CITY. ALL RIGHTS RESERVED.

Yeosu
Web Contents

여수시